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 및 선린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1.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20. 8. 18 ~ 8. 28(토·일·공휴일 제외, 총 9일)

• 감사인원 : 15명

2.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유형별 지적건수

구분	학교법인	조직·인사	교비회계·산단	입시·학사	시설	계
지적건수	6	11	9	7	5	38

나. 세부지적 및 처분: "감사결과 처분서" 참고

감사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학교(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실명이 공개된 모든 학교(기관)가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관명: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 선린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	이사회 소관사항 A 임의승인 및 학사행정 부당개입	
	○ 「고등교육법」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총장은 교무를	교육재단】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고	7 -1 -1 (4 -1)
	되어 있고,「사립학교법」제19조, 제29조 제1항 및 제	, ,
	4항 제1호,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ㅇ 동모(문잭, 경성계)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하고,	(28)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며, 학교에	< 고등교육성색실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대학	[2 2 3 1 1 8 (2 8)]
	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선린대학교】
	집행하며, 임원이「사립학교법」또는「고등교육법」의	ㅇ경징계(2명)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각각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하고,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 정관」제31조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제2항 제6호,「정관 시행세칙」제8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결정사항이고,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는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학생	
	정원의 증감, 학과신설 및 폐지 등),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 인준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의 인사(임면,	
	인사제도의 신설 및 변경, 인사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 복무,	
	직제, 보수, 퇴직금 지급, 명예·희망퇴직, 단체협약이	
	포함되어 있으며,「선린대학교 제규정관리규정」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규정, 세칙, 지침의 제정,	
	개·폐는 기획처의 검토 등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은 2017.5.22. 대학에서 승인	
	요청한 '대학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규정 제	
	50조의2 개정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아니하고 법인국장 및 상임이사를 거쳐 A 결재로 승인	
	하여 대학에 통보하는 등 【붙임】 "이사회 및 총장 소관	
	사항 A 승인현황"과 같이 2017. 5.부터 2020. 8.까지 41차례에	
	걸쳐 대학에서 승인요청한 규정개정 등 이사회 심의·	
	결정 사항과 예산전용 등 총장 소관 사항에 대해 A	
	결재로 승인하여 대학에 통보한 사실이 있음	

이사회 또는 총장 소관 사항 A 숭인현황

연 번	구분	발송일 (승인요청일)	승인문서제목	승인내용	권한구분
1	규정 개정	′17.05.22. (′17.04.20.)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규정 시행 건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규정 제50조의2(명예퇴직수당) 개정	이사회 심의·결정 사항
2	규정 개정	'17.05.31. ('17.05.31.)	선린대학교 개정 및 제정 규정 승인 통보	1. 교원인사규정 제14조 개정 2. 재무회계규정 제5장, 제8장 개정 3. 구매계약규정 제정	이사회 심의·결정 사항 및 총장소관사항
3	규정 개정	′17.09.01. (′17.08.30.)	선린대학교 규정 개정(안) 승인 통보	 □ 승인사항 1. 직원인사규정 제15조,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8조의3, 제20조 개정 2. 직원장계규정 제15조 개정 3. 보수규정 제14조 개정 4. 강의전담교원규정 제5조, 제5조의2, 제8조 개정 □ 지시사항 1. 보수규정 중 제5조는 정관 49조에 근거하여 개정바람 	이사회 심의·결정 사항
4	규정개정	′18.02.27. (′18.02.26.)	선린대학교 2018학년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승인 통보	1. 학칙 제4조, 제8조, 제9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제48조의2, 제55조, 제55조의2, 제55조의3, <별표1>, <별표3>, <별표4> 개정 2. 학칙시행세칙 제29조, 제29조2, 제43조 개정	이사회 심의·결정 사항
5	규정 개정	'18.11.21. ('18.08.28.)	선린대학교 개정 규정 승인 통보	 직제규정 제3조, 제4조 교원인사규정 제4조, 제5조, 제7조 교원인사위원회운영규정 제2조, 제4조, 제9조 강의전담교원규정 제7조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2조 	이사회 심의·결정 사항
6	규정 개정	'18.11.30. ('18.11.29.)	선린대학교 개정 규정 승인 통보	1. 직제규정 제4조, 제5조 2.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3. 장학규정 별표 1 4. 교원인사위원회운영규정 제2조	이사회 심의·결정 사항 및 총장소관사항
7	규정 개정	′18.12.31. (′18.12.21.)	선린대학교 직제규정 승인의 건	1. 교육혁신연구센터 삭제 (대학혁신지원단으로 이관) 2. 뇌인지행동연구소 산학취업처 관할로 이동	이사회 심의·결정 사항
8	규정개정	′19.02.11. (′19.01.26.)	선린대학교 규정 개정 승인 통보	1. 직제규정 제4조, 제5조, 제7조 (제4조, 제5조는 일부 변경 승인) 2. 사무분장규정 제2장,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3. 위임전결규정 4. 취업규칙 제30조, 제37조 5. 직원인사규정 제13조의4, 제16조,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4, 제27조, 별표1 (제17조의4, 별표1은 일부 변경 승인) 6. 직원인사위원회운영규정 제2조	이사회 심의·결정 사항 및 총장소관사항

연 번	구분	발송일 (승인요청일)	승인문서제목	승인내용	권한구분
9	규정 개정	'19.02.27. ('19.02.25.)	선린대학교 2019학년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승인 통보	1. 학칙 제4조, 제24조의5, 제28조, 제43조의4, 제44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2. 학칙시행세칙 제37조	이사회 심의·결정 사항
10	규정 개정	′19.03.26. (′19.03.12.)	선린대학교 규정 개정 승인의 건	1. 직제규정 제5조 2. 물품관리규정 제4조	이사회 심의·결정 사항 및 총장소관사항
11	규정 개정	'19.06.26. ('19.06.26.)	선린대학교 지침 및 규정 제개정 승인의 건	<개정> 1. 교원신규임용에 관한 지침 제1조 2. 비정년전임교원임용에 관한 지침 제5조 3. 비전임교원임용에 관한 지침 제3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4. 직제규정 제4조, 제5조, 제7조 5.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7조 6. 비전임교원규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7. 취업규칙 제31조 8. 직원인사위원회운영규정 제2조 9. 보수규정 제22조	이사회 심의·결정 사항
				<제정> 1. 강사신규채용에 관한 지침 2. 강사인사규정	1,1,2
12	규정 개정	'19.06.27. ('19.06.26.)	선린대학교 직제개편 승인의 건	대학에서 요청한 직제개편(안)	이사회 심의·결정 사항
13	규정 개정	'19.07.16. ('19.07.16.)	선린대학교 규정 개정 승인의 건	취업규칙 제51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개정	이사회 심의·결정 사항
14	규정 개정	'19.08.29. ('19.08.20.)	선린대학교 규정 개정 승인의 건	시설물관리규정 제22조 개정	총장소관사항
15	규정 개정	′19.10.01. (′19.09.24.)	선린대학교 규정 개정 승인의 건	□ 승인사항 1. 직원인사규정 제4장,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5, 제17조의7, 제20조의4, 제21조, 제21조의2 개정 (일부 변경 승인) □ 미승인사항	이사회 심의·결정 사항
16	규정 개정	′19.11.06. (′19.11.06.)	선린대학교 지침 개정 승인의 건	1. 직원인사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비정년전임교원임용에 관한 지침 제5조	이사회 심의·결정 사항
17	규정 개정	'19.11.19. ('19.11.15.)	선린대학교 지침 개정 승인의 건	비정년전임교원임용에 관한 지침 제5조	이사회 심의·결정 사항
18	규정 개정	′19.11.29. (′19.11.20.)	선린대학교 규정 개정 승인의 건	□ 승인사항 1. 교원인사규정 제7조, 별표1 개정 2. 정년보장교원임용심시위원회운영규정 제8조 개정 3. 강의전담교원규정 제5조1 개정 □ 미승인사항 1. 정년보장교원심사규정 제5조, 제6조	이사회 심의·결정 사항

연 번	구분	발송일 (승인요청일)	승인문서제목	승인내용	권한구분
19	규정 개정	′19.12.11. (′19.12.06.)	선린대학교 규정 개정 승인의 건	1. 교원인사규정 제7조 2. 교수업적평가규정 제3조, 제7조	이사회 심의·결정 사항 및 총장소관사항
20	규정 개정	′20.02.05. (′20.02.05.)	선린대학교 규정 개정 승인의 건	 내부감사규정시행세칙 제4조 교원인사규정 제2조 비전임교원규정 제2조, 제3조, 제4조 장학규정 제9조, 제14조, 제17조 사무분장규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위임전결규정 (2)대학본부 	이사회 심의·결정 사항 및 총장소관사항
21	규정 개정	'20.06.17. ('20.06.04.)	대학규정 개정 승인 신청에 대한 회신	□ 승인사항 1. 취업규칙 제67조 2. 강사인사규정 제12조 3. 직원연봉제운영규정 제5조 4. 장학규정 제6조 □ 미승인사항 1. 직원인사규정 제30조 : 추가 개정사항과 함께 공포되도록 보류	이사회 심의·결정 사항 및 총장소관사항
22	규정 개정	'20.07.07. ('20.07.03.)	대학규정 개정 승인 신청에 대한 회신	보수규정 제15조, 제18조, 제20조	이사회 심의·결정 사항
23	예산 전용	'17.03.22. ('17.03.15.)	선린대학교 교비회계 예산전용 승인 건	부서내용금액총무팀-133,690	총장소관사항
				- 중략	
37	예산 전용	'20.06.17. ('20.06.04.)	교비회계 예산전용 신청에 대한 회신	부서내용금액교무입학처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 (마이크 추가 구매)370,000교무입학처SNS 홍보단 신설 교무관리팀4,000,000	총장소관사항
38	예산 전용	'20.08.07. ('20.08.05.)	교비회계 예산전용 신청에 대한 회신		총장소관사항
39	예산 편성 요령	'17.11.07.	2018학년도 대학 예산 편성 요령 통보	2018학년도 대학 예산 편성 요령	총장소관사항
40	예산 편성 요령	'18.11.13.	2019학년도 대학 예산 편성 요령 통보	2019학년도 대학 예산 편성 요령	총장소관사항
41	예산 편성 요령	'19.11.19.	2020학년도 대학 예산 편성 요령 통보	2020학년도 대학 예산 편성 요령	총장소관사항

기관명: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 선린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	임원취임승인 신청서류 교육경력 기재 부당	
	○「사립학교법」제20조 제2항 및 제21조 제3항, 제27조에	【학교법인 인산
	따라 준용되는「민법」제61조에 따르면 임원은 관할청의	교육재단】
	승인을 얻어 취임하고, 이사 중 적어도 3분의1 이상은	○ 경고(1명)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이사는 선량한	○ 통 보(문책,경징계)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1명)
	「선린대학교 교직원 윤리규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징계시효 도과로
	따르면 교직원은 법인 정관 및 대학 학칙 등의 신분	'경고')
	별로 적용받고 있는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하며 정직하고	<고등교육정책실
	공정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별도조치 예정>(1명)
	-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은 2015. 5. 13. 교육부에 A에 대한	(1번에 포함조치)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하면서 【붙임1】"A 이사 선린대학교	
	외래교수 위촉 및 관련규정 현황"과 같이 A가 대학	【선린대학교】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실은 2001.11.14. 및 2011.3.15.	○ 경고(1명)
	2회만 확인되고, 관련규정에 외래교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되어 있음에도, A가 2001.11.부터 2015.4.까지	
	선린대학교 외래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한 이력서를	<별도조치>
	첨부하는 등 【붙임 2】 "A 이사 임원취임승인신청서류	ㅇ 수사의뢰
	교육경력 부당기재 현황"과 같이 2015.5.부터 2017.1.	
	까지 3차례 교육부에 A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하면서 허위로 선린대학교 외래교수 재직 기간을 기재한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았고,	
	※ A가 선린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 없음	
	- 특히, 2015.12.29. 이사 A를 교육경험이사로 변경하는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하면서는 대학 인사정보시스템에	
	A의 소속이 '○실'로 되어 있고, 대학에 □부가 없었음	
	에도 증명서 발급 담당 D가 법인팀장 E의 요구로 '□부'로	
	소속을 변경하여 수기로 A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첨부한 사실이 있음	

【붙임 1】

A 이사 선린대학교 외래교수 위촉 및 관련규정 현황

중빙자료	관련사실	선린대 외래교수 규정
위촉장	선린대학 '외래교수'로 위촉 - 위촉일 : 2001.11.14.	<1999.12.1. 제정> · 제7조 - 외래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교 전임교수와 협동과제를 공동연구할 때에는 연구기간 만료시까지 연장할 수있다.
임용공문 (내부결재)	선린대학 '외래초빙교수'로 위촉 - 위촉기간 : 2011.3.15. ~ 2012.3.14 이후는 자동연장 ※ 위촉장은 확인되지 않음	 <2011.2.17. 개정> · 제7조 - 외래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교 전임교수와 협동과제를 공동연구할 때에는 연구기간 만료시까지 연장할 수있다. · 제2조 제2호 - 외래교수의 위촉은 추천위촉에 따라 외래초빙교수, 외래자문교수로 구분한다.

【붙임 2】

A 이사 임원취임승인신청서류 교육경력 부당기재 현황

						첨부서류 기	재내용
연번	신청일	직책	신청사유	임기	첨부서류	선린대학교 재직기간	직위
1	2015.05.13.	이사	보선	승인일 ~ '17.3.16.	이력서	′01.11. ~′15.4.	외래교수
2	2015.12.29.	교육이사	교육경험 이사로 변경	승인일 ~ '17.3.16.	경력증명서	′09.3.1.~′12.2.28.	외래초빙교수
3	2017.01.12.	교육이사	중임	'17.3.17. ~ '21.3.16.	이력서	′03.5. ~′15.4.	외래교수

기관명: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	수익사업회계 관리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1회계 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학교법인 교육재단】	인산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15조 제2호, 제18조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 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당해회계연도의 활동에 따른 모든 자금수입예산 및 자금지출예산이 실제의 자금수입	○경고(1명) ○주의(1명)	
	모는 자금구합에산 및 자금시물에산이 설제의 자금구합 및 자금지출의 내용과 명백히 대비되도록 자금계산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은 2018년 이전 미상일부터 건물 관리용역업체 '○○(대표 AX)'에 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인 경북 포항시 북구 ㄱ 소재 다가구주택(지상4층, 16가구, 646.8㎡) 유지관리(보수 등)를 위탁하면서 2019. 6.부터 2020. 3.까지 3회(2019. 6. 25. / 2019. 10. 11. / 2020. 3. 16.)에 걸쳐 201호 입주자(F)로 하여금 법인으로 납부해야 할 임대료 합계 3,000천원을 위 업체로 직접 입금하도록 하여 업체 용역비를 상계처리한 사실이 있음		

기관명: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 선린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4	사학연금법인부담금 등록금회계 집행 부적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7조 제1항에는 법인부담금은	【학교법인 인선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교육재단】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ㅇ경고(1명)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사립학교법」제16조 제1항 및 제29조 제2항	【선린대학교】
	에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 경고(9명)
	사항이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0.872(2.8)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6 ~ 2019회계연도에 교육부	
	에서 각 학교법인 및 사립전문대학에 예·결산 유의사항을	
	통보하면서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편성·지출하도록 하였고, 학교	
	법인 인산교육재단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통보를 하면서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법인부담금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지출하도록 하였는데도,	
	- 선린대학교는 2017회계연도에 비등록금회계 적립금 376,397	
	천원을 계상하고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13,001천원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안)(추경기준)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해당연도 결산	
	기준 비등록금회계에서 362,401천원을 적립하고 잉여금	
	(기타차기이월금) 793,197천원이 발생하여 비등록금회계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집행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102,223	
	천원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는 등【붙임】"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등록금회계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7 ~ 2019회계연도에 비등록금회계 잉여금(적립금 포함)을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계상하고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합계 392,002천원을	
	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도록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비등록금회계에서 잉여금이 발생	
	하여 비등록금회계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집행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합계 381,716	
	천원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등록금회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천원)

		예산							결산						
회계	구	사학연금법인부담금			ъ	비등록금회계		사학연금	사학연금법인부담금 납부		비등록금회계 운영		운영		
연도	- 분	납부 총액	등록금 회계	비등록금 회계	법정부담 전입금	적립금 적립	차기 이월금	납부 총액	등록금 회계	비등록금 회계	법정부담 전입금	적립금 적립	기타차기 이월금		
2017	본	381,001	113,001	268,000	10,000	376,400	0	367,727		265 504	12 000	262.401	702 107		
2017	추 경	381,001	113,001	268,000	10,000	376,397	0	307,727	102,223	3 265,504	13,000	362,401	793,197		
2018	본	480,001	120,001	360,000	10,000	880,000	0	456,961		114 022	114,832	342,129	26,000	859,517	403,655
2010	추 경	480,001	120,001	360,000	10,000	880,000	268,335	450,901	114,002	012/12	20,000	007,017	100,000		
2019	본	493,000	123,000	370,000	10,000	920,000	200,988	588,663	1.4.661 124	54,661 424,002	2 1,000	684,627	107.052		
2019	추 경	565,000	159,000	406,000	9,999	770,000	<u>26,501</u>	300,003	164,661	424,002	1,000	004,027	107,853		
하-계	뵨	1,354,002	356,002	998,000	30,000	2,176,400	200,988	1 412 251	201 716	1,031,635	40,000				
됩세	합계 추 경	1,426,002	392,002	1,034,000	29,999	2,026,397	294,836	1,413,351	381,716	1,001,000	40,000	1,906,545	-		

기관명: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연번 5	이사회 운영 부적정 ○ 「사립학교법」제15조 제4항 및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학교법인 운영(임원/정관) 업무 안내(사립대학정책과-7646, '16.7.29.)」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 통지는 반드시 재적이사 전원에게 통지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소집 통지서에 명시한 안건에 한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이사회 소집 통지기한 미준수에 관한 사항】- ① -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은 2017. 9. 8. "징계 결의 및 징계위원회 위원 선출 건" 심의를 위한 2017년 제6차	【학교법인 인산 교육재단】 <①, ②관련> ○경고(2명) <② 관련> ○경고(2명) <③ 관련> ○기관경고 ○통보 - 이사회 소집 통지는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회의 6일 전인 2017. 9. 1.(법정통지기한 : 2017. 8. 31.) 통지하는 등 【붙임1】"이사회 소집 통지기한 미준수 현황"과 같이 2017. 9. 1.부터 2019. 2. 19.까지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총 3회 이사회 소집 6일 전에 통지한 사실이 있고, 【이사회 소집 미통지 안건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② - 2017. 6. 27. 2017년 제4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서 (통지일 : 2017. 6. 19.)에 명시한 안건인 "교원 임용의 건"이외에 이사회 소집 통지서에 명시하지 않은 안건인 "대학 차량운반구 구입의 건", "불용재산 제각 심의의 건"등 2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붙임2】"이사회 소집 미통지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안건 심의·의결 현황"과 같이 2017. 6. 27.부터 2020.	
	2. 5.까지 총 12회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사회 소집	
	통지서에 명시하지 않은 안건 총 22건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실이 있으며,	
	【이사회 소집 통지 방법 부적정에 관한 사항】- ③	
	- 2017. 9. 8. 2017년 제6차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이사	
	G에게는 통지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일반우편으로 통지	
	하는 등 【붙임3】 "이사회 소집 통지 방법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7. 9. 8.부터 2020. 6. 26.까지 총27회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면서 일부 이사에 대해서는 통지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이사회 소집을	
	통지한 사실이 있음	

【붙임1】

이사회 소집 통지기한 미준수 현황

		이거	사회			
연번	회차	개최일 법정통지 기한		통지일 (시점)	의결 안건	비고
1	2017년 6차	2017.9.8.	2017.8.31.	2017.9.1.	1. 징계 결의 및 징계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	
2	2018년 2차	2018.2.27.	2018.2.19.	2018.2.20.	 교원 인사(안) 심의의 건 교원 임용의 건 2018학년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의 건 4. 2017학년도 교비회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정관 개정의 건 	
3	2019년 2차	2019.2.26.	2019.2.18.	2019.2.19.	교원 신규임용(안) 심의의 건	

【붙임2】

이사회 소집 미통지 안건 심의 의결 현황

	이사					
연번	회차	개최일	통지일 (시점)	통지 안건	미통지 안건 심의·의결 현황	비고
1	2017년 4차	2017.6.27.	2017.6.19.	1. 교원 임용의 건	1. 대학 차량운반구 구입의 건 2. 불용재산 제각 심의의 건	
2	2017년 7차	2017.10.31.	2017.10.19.	 2017학년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개방이사(감사)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보선)의 건 	1. 정관 개정의 건 2. 대학 교목 신규채용 건	
3	2018년 2차	2018.2.27.	2018.2.20.	1. 교원 인사(안) 심의의 건 2. 정관 개정의 건	 교원 임용의 건 2018학년도 학칙 및 학칙시행 세칙 개정의 건 2017학년도 교비회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2018년 3차	2018.4.20.	2018.4.10.	 2017학년도 법인회계 결산 심의의 건 2017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심의의 건 2018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2019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 시행 학과구조변경(안) 2018학년도 대학 보수지침 심의의 건 	
5	2018년 6차	2018.8.31.	2018.8.21.	1. 교원 징계결과 보고의 건	1. 법인 관용차량 구입의 건	
6	2018년 7차	2018.10.24.		 임원 선임의 건 정관 개정의 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 불용재산 제각 심의의 건 2. 직제 변경(안)의 건	
7	2018년 8차	2018.11.16.	2018.11.8.	1. 학과 폐과교원 전환배치 대상자 심의의 건	1.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시행(안) 심의의 건	
8	2018년 9차	2018.11.30.	2018.11.22.	1. 부총장 선임의 건 2. 정관시행세칙 개정의 건	1. 정관 개정의 건 2.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세부기준 심의의 건	
9	2018년 10차	2018.12.27.	2018.12.19.	 2019학년도 법인일반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2019학년도 법인수익사업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2018학년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교원 재임용(안) 심의의 건 총장 선임의 건 2018학년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대상자 심의의 건 	 2018학년도 법인일반회계 제2차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2018학년도 법인수익사업회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퇴직 위로금 지급의 건 	
10	2019년 1차	2019.2.8.	2019.1.30.	 2019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교원 신규임용(안) 심의의 건 정관 개정의 건 	1. 유치원 및 건강증진시설 설치의 건	

	이사회					
연번	회차	개최일	통지일 (시점)	통지 안건	미통지 안건 심의·의결 현황	비고
11	2019년 9차	2019.12.19.		 2019학년도 법인일반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2020학년도 법인일반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2020학년도 법인수익사업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교원 재임용(안) 심의의 건 	1.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안) 심의의 건	
12	12 2020년 1차 2020.2.5. 2020.1.23. 1. 2019학년도 교비회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2. 2020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 심의의 건		 교원 재임용(안) 심의의 건 2020학년도 대학보수 등의 업무 지침 심의의 건 			
			22건			

【붙임3】

이사회 소집 통지 방법 부적정 현황

	이사회		재적	불참	이사회 소집	통지 방법		
연번	회차	개최일	통지일 (시점)	이사	이사	등기우편	일반우편 등	비고
1	2017-6	2017.9.8.	2017.9.1.	9	2	ı	ı	
2	2017-7	2017.10.31.	2017.10.19.	9	0	-	-	
3	2017-8	2017.12.15.	2017.12.5.	9	2	-	-	
4	2018-1	2018.2.8.	2018.1.31.	9	1	-	-	
5	2018-2	2018.2.27.	2018.2.20.	9	2	ı	-	
6	2018-3	2018.4.20.	2018.4.10.	9	2	ī	-	
7	2018-4	2018.6.26.	2018.6.15.	9	0	-	-	
8	2018-5	2018.7.14.	2018.7.6.	9	1	-	-	
9	2018-6	2018.8.31.	2018.8.21.	9	1	-	-	
10	2018-7	2018.10.24.	2018.10.12.	9	1	-	-	
11	2018-8	2018.11.16.	2018.11.8.	8	1	1	-	
12	2018-9	2018.11.30.	2018.11.22.	8	0	-	-	
13	2018-10	2018.12.27.	2018.12.18.	8	0	-	-	
14	2019-1	2019.2.8.	2019.1.30.	7	0	-	-	
15	2019-2	2019.2.26.	2019.2.19.	7	1	1	-	
16	2019-3	2019.3.26.	2019.3.18.	7	7	ı	-	
17	2019-4	2019.4.25.	2019.4.17.	7	1	-	-	
18	2019-5	2019.5.30.	2019.5.22.	8	1	ı	-	
19	2019-6	2019.6.27.	2019.6.19.	8	2	ī	-	
20	2019-7	2019.8.26.	2019.8.16.	8	2		-	
21	2019-8	2019.10.24.	2019.10.15.	8	0	-	-	
22	2019-9	2019.12.19.	2019.12.10.	8	3	-	-	
23	2020-1	2020.2.5.	2020.1.23.	8	1	-	-	
24	2020-2	2020.2.27.	2020.2.19.	8	3	-	-	
25	2020-3	2020.3.26.	2020.3.18.	8	2	-	-	
26	2020-4	2020.4.28.	2020.4.20.	8	3	-	-	
27	2020-6	2020.6.26.	2020.6.16.	8	2	-	-	

^{*} AY 이사는 해외거주자로서, 본의 동의하에 이메일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관명: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6	교육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사립학교법」제5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	【학교법인 인산 교육재단】
	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 경고(1명)
	하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 통보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3조에 따르면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되고,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	387.1m)을 교육용으로
	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사용하기 바람
	-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은 2017. 5. 1. 정관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대학 부설기관인 □□교육원*을 법인 산하기관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붙임】"□□교육원 대학시설 사용현황"과 같이 2017. 5.부터 2020. 8. 감사일 현재까지 교육용기본재산인 △관 지하 1층(면적:387.1㎡)을 관할청 허가없이법인 산하 □□교육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지정('96)한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 보수교육 등)로써 보건복지부 지침(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	

□□교육원 대학시설 사용 현황

(단위 : m²)

연번	위치	호수	면적	용도	비고
1	△관 지하 1층	B101-1	20.7	교육원 행정실	
2	△관 지하1층	B101-2	19.3	원장실	
3	△관 지하 1층	B101-3	104.9	강의실(꿈)	화장실, 복도 등
4	△관 지하 1층	B101-4	60.0	강의실(기쁨)	공용공간 면적 제외
5	△관 지하 1층	B101-5	78.7	강의실(행복)	
6	△관 지하1층	B102	103.5	몬테소리실	
	합 계		387.1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7	연구교원 연수결과보고서 미제출 등	
	○ 「선린대학교 교수 국내외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제2조	○ 경고(8명)
	제2호에 따르면 교육개발부문 국내외 연구년제는 학생	통보
	교육, 강의·교수학습법, 교육과정, 학부·학과(계열) 발전	
	등에 관한 개발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8조의2 제3항 및 제9조에 따르면 교육개발부문의	
	연구교원은 연구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교육개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연수	
	기간 중 1회의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고, 연수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국내외 연구년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시는 연수기간 동안 수령한 일체의 급여를 봉급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선린대학교 ▷과 교수 G는 2017. 3. 교육개발부문 연구	
	교원으로 선발(연구기간 : 2017. 3. 1. ~ 2018. 2. 28., 연구과제 :	
	▷부 교육개발부문, 제출기한 : 2018. 3. 15.)되어 연구를 진행	
	하면서 연구기간 중 중간보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기간 종료 이후 2020. 8. 감사일 현재까지 교육개발	
	결과보고서 및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붙임】 "연구교원 연수결과보고서 등 미제출 현황"과	
	같이 2017. 3.부터 2020. 2.까지 위 G 등 교육개발부문	
	연구년 선발교원 4명은 연구기간 중 중간보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2020. 8.	
	감사일 현재까지 교육개발결과보고서 및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실지감사기간 직후 보고서 제출 완료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 또한, 선린대학교는 위 G 등 교육개발 부문 연구년 선발	
교원 4명이 연구기간 중 중간보고, 교육개발결과보고서	
및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2020. 8.	
감사일 현재까지 보고서를 제출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연구교원 연수결과보고서 등 미제출 현황

연 번	연 도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시작일	종료일	중간 보고 여부 (연수 기간중)	교육개발 결과보고 여부 (연구기간 만료후 15일)	연수결과 보고 여부 (연수 만료후 2개월)	비고
1	2017	-	교수	-	-	2017.3.1.	2018.2.28.	×	×	×	정년퇴직 (2018.2.28.)
2	2018	-	교수	-	-	2018.9.1.	2019.2.28.	×	×	×	(2019.2.28.)
3	2018	-	교수	-	-	2019.3.1.	2019.8.31.	×	×	×	(2019.8.31.)
4	2019	-	교수	-	-	2019.9.1.	2020.2.29.	×	×	×	(2020.2.29.)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8	미허가 공무외 국외여행 부적정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 주의(4명)
	복무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린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선린대학교 위임전결규정」 제4조에 따른 별표에는	
	전 교직원은 국외 출장 및 휴가시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선린대학교 ▽계열 부교수 H은 2017. 4. 20.(목)부터	
	2017. 4. 22.(토)까지 3일간 총장의 허가 없이 공무 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등 【붙임】 "미허가 공무외 국외	
	여행 현황"과 같이 2017. 4.부터 2019. 7.까지 위 H 등	
	교원 4명이 총 7회(20일)에 걸쳐 총장의 허가 없이 해외여	
	행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미허가 공무외 국외여행 현황

연	소속	z] <u></u>	성명	여행	기간	일수	미승인 회스	
번 조숙 번 조숙		직급	78 73	출발	도착	(이탈일)	횟수 (일수)	
				2017. 4. 20.(목)	2017. 4. 22.(토)	3 (2)		
1	-	부교수	-	2018. 4. 26.(목)	2018. 4. 30.(일)	4 (2)	3 (6)	
				2019. 5. 22.(목)	2019. 5. 23.(금)	2 (2)		
2	-	교수		2018. 11. 13.(화)	2018. 11. 15.(목)	3 (3)	2	
2		312	-	2019. 7. 16.(화)	2019. 7. 20.(토)	5 (4)	(7)	
3	-	조교수	1	2019. 4. 16.(화)	2019. 4. 16.(화) 2019. 4. 20.(토)		1 (4)	
4	-	조교수	-	2019. 6. 30.(일) 2019. 7. 3.(수)		4 (3)	1 (3)	
	합계		4명				7 (20)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9	겸직 미허가 및 복무 미처리 외부 출강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하도록 되어	○ 경고(2명)
	있는「국가공무원법」제64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주의(4명)
	제2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1 1(2 0)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 정관」제43조의12 제2항에 따르면 교원이	
	다른 학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 또는 다른 기관에 전속	
	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직을 위촉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고, 「선린대학교 강사료지급규정」 제9조에 따르면	
	교원은 타 대학의 출강을 불허하되 타 대학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10장	
	3항 자목(외부강의 출강시 복무관리 철저)에 따르면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 미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근무상황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선린대학교 ▷과 조교수 I는 2017학년도 1학기에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무상황도 처리하지	
	않은 채 △△대학교 강사로 출강하여 "ㄴㅅ(금,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09:00~10:50)" 과목을 강의하는 등 【붙임】"겸직 미허가	
	및 복무 미처리 외부 출강 현황"과 같이 2017학년도 1학기	
	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위 I 등 교원 6명은 타 대학에	
	출강하면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I 등 3명은 근무상황	
	처리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붙임】

겸직 미허가 및 복무 미처리 외부 출강 현황

연 번	학과	직급	성명	출강대학	년도	학기	직급	강의과목	학 점	출강요일 (강의시간)	복무 처리 여부		
					△△대학교	2017	1학기	강사	-	2	금 (09:00~10:50)	×	
				△△대학교	2017	2학기	강사	-	1	수 (16:00~16:50)	×		
						▷▷대학교	2017	1학기	강사	-	2	월 (09:00~11:00)	×
				▷▷대학교	2017	1학기	강사	-	2	월 (11:00~13:00)	×		
				▷▷대학교	2017	2학기	강사	-	1	글 (09:00~10:00)	×		
1		조교수		▷▷대학교	2017	2학기	강사	-	1	금 (10:00~11:00)	×		
	-	32,112,7	-	▷▷대학교	2018	1학기	강사	-	2	목 (09:00~11:00)	×		
				▷▷대학교	2018	1학기	강사	-	2	목 (11:00~13:00)	×		
				▷▷대학교	2018	2학기	강사	-	1	목 (09:00~10:00)	×		
				▷▷대학교	2018	2학기	강사	-	1	글 (10:00~11:00)	×		
							▷▷대학교	2019	1학기	강사	-	2	목 (09:00~11:00)
				▷▷대학교	2019	1학기	강사	-	2	목 (11:00~13:00)	×		
	-	조교수		▽□대학교	2017	1학기	외래 교수	-	1	화 (09:00~09:50) (10:00~10:50) (14:00~14:50)	×		
2			-	▽□학교	2017	1학기	외래 교수	-	1	화 (09:00~09:50) (10:00~10:50) (14:00~14:50)	×		
						▽▽대학교	2017	2학기	외래 교수	-	2	금 (09:00~10:50) (11:00~12:50)	×
				▽▽대학교	2017	2학기	외래 교수	-	2	금 (09:00~10:50) (11:00~12:50)	×		
				△△대학교	2017	1학기	강사	-	1	화 (14:00~15:50)	×		
3	_	조교수	_	△△대학교	2017	2학기	강사	-	2	금 (14:00~17:50)	×		
			-	△△대학교	2018	1학기	강사	-	1	화 (14:00~15:50)	×		
				△△대학교	2018	2학기	강사	-	1	금 (12:00~13:50)	×		
4	-	조교수	-	△△대학교	2019	1학기	강사	-	2	수 (09:00~10:50)	×		
5	-	조교수	-	△△대학교	2019	1학기	강사	-	2	토 (12:00~14:45) (18:00~20:40)	근무 시간외		
6	-	조교수	-	▽▽대학교	2019	1학기	강사	-	3	화 (19:45~22:05)	근무 시간외		

리 ㅇ 주의(3명)
4
2
긔
۱,
<u>-</u>
1_,
<u>t</u> ,
<u>)</u>
1
2
<u> </u>
6.
t)
<u> </u>

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 여부 미확인 현황

연	소속	직급	성명	의원면직	법인이사	이사회	제한대상자 해당여부 결과 통보일				- 퇴직일
번	公寺		제청일	승인일	감사원	검찰	경찰	교육부	되식일		
1	-	조교수	-	2017. 6. 9.	2017. 6. 13.	2017. 6. 19.	×	×	×	×	2017. 6. 9.
2	-	조교수	1	2017. 6. 14.	2017. 6. 19.	2017. 8. 24.	×	×	×	×	2017. 8. 31.
3	-	조교수	-	2018. 2. 9.	2018. 2. 12.	2018. 3. 5.	×	×	×	×	2018. 2. 28.
4	-	조교수	-	2018. 8. 24.	2018. 8. 24.	2018. 9. 1.	×	×	×	×	2018. 8. 31.
5	-	조교수	-	2019. 2. 5.	2019. 2. 25.	2019. 3. 11.	×	×	×	×	2019. 2. 28.
6	-	조교수	-	2019. 8. 15.	2019. 8. 21.	2019. 9. 10.	×	×	×	×	2019. 8. 31.
7	-	조교수	-	2020. 1. 6.	2020. 1. 7.	2020. 3. 1.	×	×	×	×	2020. 2. 29.
8	-	조교수	ı	2020. 1. 30.	2020. 1. 31.	2020. 3. 1.	×	×	×	×	2020. 2. 29.
9	-	조교수	-	2020. 3. 1.	2020. 3. 5.	2020. 4. 21.	×	×	×	×	2020. 3. 1.
10	-	조교수	-	2020. 3. 4.	2020. 3. 5.	2020. 4. 21.	×	×	×	×	2020. 3. 10.
11	-	조교수	-	2020. 3. 23.	2020. 3. 24.	2020. 4. 21.	×	×	×	×	2020. 3. 29.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1	부정청탁 및 교원 신규채용 절차 부당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 경징계(2명)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ㅇ 통보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선린대학교 교직원윤리규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교직원은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법인 정관 및 대학 학칙 등의 신분별로 적용받고 있는	제1항 제3호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신의에	기반염의도 같은 합
	따라 성실하게 행동하며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갖추어야	제1호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기 바람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발언, 행동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 정관」제43조의11에	
	따르면 교원은 소속 학과 전공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2020-1학기 학과별 신규교원 초빙 수요	
	조사 시행계획(기획팀-1220, 2019. 9.21.)"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직원의 수급 및 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신규교원 초빙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선린대학교 K는 2019. 7월초(날짜 미상) 지인(교회 집사)	
	으로부터 융학 전공자 L을 소개 받은 후, 2019. 7. 15.	
	총장실에서 🗘계열장 조교수 M에게 위 L의 이력서를	
	보여주며 신규 교원으로 추천한 사실이 있으며,	
	※ 今계열장 조교수 M는 전공분야 불일치 이유로 거절하였으며, 이후 2020. 1. L은 2020. 1차 수계열 전임교원에 응모하였으나 서류전형에서 자격기준 미달로 탈락시킴	
	- 또한, 선린대학교 ☆장 교수 N은 2020학년도 1학기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신규교원 채용과정을 진행하면서 2019. 10. 10. 🗘계열	
	(■·●전공, 입학정원 95명)로부터 ■ 전공분야 전임교원	
	1명과 강의전담교원 1명 등 2명을 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채용절차를 진행하던 중 전임교원은 면접부적격(4명	
	응모자 전원 불합격)으로, 강의전담교원은 지원자가 없어 신규	
	교원을 채용할 수 없게 되자, 🗘계열과 협의도 없이 채용	
	전공분이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임의로 유학(생산, 품질)으로 변경	
	하여 "2020학년도 1학기 교원채용 계획 변경(안)"을 2020. 1. 20.	
	2020년 제1차 기획위원회에 상정한 후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학 전공자 L과 O을 ♠계열 강의전담교원 임용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L과 O은 2020. 2. 26.자로 임용제청되어 2020. 3. 1.자로 강의전담 교원으로 임용되었으며, L은 2020. 9. 1.자로 전임교원(정년보장)으로 임용됨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2	일반직원 신규채용 자격제한 부적정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ㅇ경고(4명)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o 통보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학교	따라 직원인사규정을 개정하기 바람
	법인 인산교육재단 정관」제83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반	\\\\\\\\\\\\\\\\\\\\\\\\\\\\\\\\\\\\\
	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	
	하나, 운영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선린대학교는 2013. 6. 18. '직원인사규정' 제9조의2	
	제1항에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2017. 3. 9.	
	'선린대학교 직원 채용 공고(평생교육원 임시직)' 시 지원	
	자격을 '교육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하는 등	
	【붙임】 "직원 채용 시 학력제한 현황"과 같이 직원인사	
	규정에 학력제한 규정을 두어 2017. 3.부터 2020. 8. 감사일	
	현재까지 위 건 등 총 37회에 걸쳐 신규직원 채용 시	
	전문대학 졸업 이상에서 대학원 박사수료 이상까지로	
	학력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직원 채용 시 학력제한 현황

연번	공고일	채용부서	모집공고매체	채용예정 인원	지원자 수	합격자 수	제한 학력	비고
1	2017.03.09.	-	홈페이지,워크넷	1	6	1	대학이상	
2	2017.07.20.	-	홈페이지,워크넷	2	11	2	전문대이상	
3	2017.11.06.	-	홈페이지,워크넷	1	7	1	전문대이상	
4	2017.12.01.	-	홈페이지,기독공보	1	12	1	대학원이상	
5	2018.04.02.	-	홈페이지,워크넷	1	10	0	전문대이상	
6	2018.06.28.	-	홈페이지,워크넷	1	2	0	전문대이상	
7	2018.07.09.	-	홈페이지,워크넷	1	18	0	전문대이상	
8	2018.07.26.	-	홈페이지,워크넷	1	7	0	전문대이상	
9	2018.08.10.	-	홈페이지,워크넷	1	6	1	전문대이상	
10	2019.03.08.	_	홈페이지,워크넷	2	16	0	박사수료이상	교수학습 지원담당
				_			전문대이상	사업행정 담당
11	2019.03.21.	-		1	1	1	박사수료이상	
12	2019.03.21.	-	호레시키 이크네	1	13	1	전문대이상	
13	2019.03.21.	-	홈페이지,워크넷	1	0	0	대학이상	
14	2019.03.21.	-		1	4	1	전문대이상	
15	2019.04.04.	-	호레시키 이크네	1	0	0	전문대이상	
16	2019.04.04.	-	홈페이지,워크넷	1	1	1	전문대이상	
17	2019.06.13.	-	출레시키 이크네	1	0	0	전문대이상	
18	2019.06.13.	-	홈페이지,워크넷	1	0	0	전문대이상	
19	2019.06.20.	-	호레시키 이크네	1	3	1	전문대이상	
20	2019.06.20.	-	홈페이지,워크넷	1	2	1	전문대이상	
21	2019.07.11.	-	홈페이지,워크넷	1	4	0	전문대이상	
22	2019.07.30.	-	홈페이지,워크넷	1	1	1	전문대이상	
23	2019.08.22.	-	홈페이지,워크넷	1	3	1	전문대이상	
24	2019.09.27.	-	홈페이지,워크넷	1	5	1	전문대이상	
25	2019.10.13.	-	홈페이지,워크넷	1	1	1	대학이상	
26	2019.11.04.	-	홈페이지,워크넷	1	5	0	석사이상	
27	2019.11.18.	-	홈페이지,워크넷	1	2	1	석사이상	
28	2020.02.05.	-	홈페이지,워크넷	1	2	1	석사이상	
29	2020.02.14.	-	홈페이지,워크넷	3	13	2	석사이상	교육성과 관리 등
					_	_	대학이상	취·창업 지원
30	2020.03.06.	-	홈페이지,워크넷	1	3	1	석사이상	
31	2020.03.26.	-	홈페이지,워크넷	1	18	1	전문대이상	
32	2020.04.21.	-	홈페이지,워크넷	1	9	1	전문대이상	
33	2020.04.24.	-	홈페이지,워크넷	1	2	0	전문대이상	
34	2020.06.09.	-	홈페이지,워크넷	1	2	0	전문대이상	
35	2020.06.26.	-	홈페이지,워크넷	1	2	0	전문대이상	
36	2020.07.13.	-	홈페이지,워크넷	1	1	0	전문대이상	
37	2020.07.28.	-	홈페이지,워크넷	1	2	0	전문대이상	
	합7	례		41	194	23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3	일반직원 신규채용 절차 부당 변경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① 관련>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ㅇ경징계(1명)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되고,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② 관련>
	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 경고(5명)
	되며,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 ,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하고,	
	이 경우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하며, 「선린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4조에 따르면 직원의 임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이를 정하고,	
	「선린대학교 일반직원 제한경쟁채용 시행 계획의 건	
	(2017~2019년)」에 채용 일정은 채용공고, 필기시험 및	
	면접, 결과보고, 직원인사위원회 개최(보고), 총장 인사	
	승인 및 이사장 인사 제청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채용공고 내용의 부당 변경 관련】- ①	
	- 선린대학교 P은 2017. 1. 12. '2017학년 선린대학교 일반	
	직원 제한경쟁채용 시행 계획*의 건'을 결재한 후 필기	
	및 면접시험 결과를 2017. 2. 8. 보고받았으나, 직원인사	
	위원회에서 일반직 제한경쟁채용 대상자 6명(Q, R, S, T,	
	U, V)에 대한 직원임용 사항을 심의한 회의결과를 2017. 2. 13.	
	보고받은 후, 2017. 2. 16. 객관성 있는 점수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위 채용계획을 임의로 취소한 사실이	
	있으며,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 또한, 2017. 6. 2. '선린대학교 일반직원 제한경쟁채용	
	시행 계획**의 건)'을 새롭게 다시 수립한 후, 2017. 9. 1.자로	
	일반직원 제한경쟁채용 대상자 4명(W, V, T, S)을 신규	
	채용한 사실이 있음	
	* [평가방법] 필기평가(20%), 근무평정(40%), 면접시험(40%) ** [평가방법] 근무평가(40%), 근속년수(10%), 총장업무평가(20%), 행정지원처장 근무평가(10%), 논술평가(20%)	
	【채용과정 등 미공지 관련】- ②	
	- 선린대학교는 2019. 11. 11. '선린대학교 직원 제한경쟁	
	채용 시행 계획 승인의 건'을 수립한 후, 지원자를 모집	
	('20.3.1.임용예정)하기 위하여 2019. 12. 23. 필기 및 면접	
	전형을 실시하고 직원인사위원회('20.3.30.) 심의결과를	
	2020. 4. 13. 총장에게 보고하였음에도 2020. 8. 감사일	
	현재까지 임용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등 채용 일정변경	
	내용을 지원자들에게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안내방법] 홈페이지 게시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4	복무 미처리 강의	
	○ 「선린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9조의3에 따르면 임시직	` ,
	이라 함은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 정관 제6장 제4절에	○ 주의 <i>(</i> 1명)
	정한 일반직원이 아닌 자로서 대학과 일정기간 고용	, ,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하며, 「2018년	
	교목 신규임용자 근로계약* 승인의 건(총무팀-556,'18.2.5.)」에	
	따르면 근로자 X(임시직)의 임용기간은 2018.2.1.부터	
	2019.1.31.까지로 담당업무는 교목실 교목업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도,	
	* [근무시간] 매주 5일(09시~18시) [보수조건] 본봉 251만원 및 상여금, 수당 지급	
	- 선린대학교 직원(임시직) X는 교목실 교목업무를 하면서	
	2018. 3. 2.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선린대학교와 별도로	
	체결한 후 2018. 3. 6. 연차 등의 복무처리 없이 'ㄴㅇ'	
	과목을 강의하는 등 【붙임】 "직원 시간강사 강의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ㄴㅇ'과목을 강의	
	하면서 복무처리 없이 주당 2시간*씩 총 30회 강의한 사실이	
	있음	
	* 매주 화요일 1, 2교시	

직원 시간강사 강의현황

구분	수업시수	개설과목	수업시간표	강의 횟수	비고
2018-1학기	2시간	L 0	ㄴㅇ 화요일 1,2교시		
2018-2학기 2시간		L 0	화요일 1,2교시	15회 (주1회)	
합 7	레	-	-	30회	-

※ 강사료 : 회당 50,000원(시간당 25,000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5	직원 무면허 운전	
	○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 정관」제85조에 따르면 일반	` '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공무원법」제56조 및 제6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도로교통법」 제43조에	○고발
	따르면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선린대학교 Y는 2018. 9. 1.(토) 음주운전으로 10월 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약 1년간 무면허기간 이었는데도,	
	2019. 3. 13. 배우자 명의 장기렌터카를 이용해 대구까지	
	직접 운전하는 등 【붙임】"2019년도 무면허 운전 현황"과	
	같이 2019. 3. 13.부터 9. 21.까지 총 18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	

2019년도 무면허 운전 현황

cd al	이케이	ㅁ귌	운행지		이 레 리 마	ul –
연번	운행일	목적	지역	장소	운행차량	비고
1	3.13.	출장	대구	-	자차	제주출장
2	3.15.	출장	포항	-	자차	제주출장
3	6.14.	출장	포항	-	업무용차량	
4	6.15.	출장	포항	-	업무용차량	
5	6.16.	출장	포항	-	업무용차량	
6	7.5.	출장	대구	-	자차	
7	7.15.	출장	포항	-	업무용차량	
8	7.24.	출장	포항	-	업무용차량	
9	8.5.	출장	울산	-	업무용차량	
10	8.14.	출장	포항	-	업무용차량	
11	8.19.	출장	경주	-	업무용차량	
12	8.27.	출장	포항	-	업무용차량	
13	8.28.	출장	포항	-	업무용차량	
14	9.17.	출장	포항	-	업무용차량	
15	9.18.	출장	영천	-	업무용차량	
16	9.19.	출장	포항	-	업무용차량	
17	9.20.	출장	대구	-	업무용차량	
18	9.21.	출장	대구	-	업무용차량	

[※] 배우자명의 장기렌터카를 '자차'로 표기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6	직원 근무평정 개입 부당	
	○ 「선린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7조의2 및 제17조의5에	ㅇ경징계(2명)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이라 함은 근무성적 평정서에 의해	
	평가위원이 판정한 평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고, 근무	<별도조치>
	성적의 평정은 평가위원이 하며, 팀원·팀장이 피평정자일	·
	경우 평정자는 2차 부서장(반영비율 25%), 4차 부총장	ㅇ고발
	(반영비율 20%) 등으로 구분하며 각각 독립적으로 동시에	
	평정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선린대학교 Z는 선린대학교가 '2018학년도 직원근무평정	
	및 성과급 평가 시행 계획 보고(총무팀-353, '19.1.29.)'에	
	따라 2019. 2. 15.부터 2019. 2. 18.까지 평정자별 평정을	
	완료하였는데도, 2019. 2. 25. 보직자회의 시작 전에 K	
	에게 일부 부서의 직원 근무평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한 후 K의 지시*에 따라 당일 보직자회의에서	
	일부 부서의 직원 근무평정 재실시를 지시하고, AA으	
	로부터 평정서류를 다시 제출받은 사실이 있음 * 평정점수는 85점에서 95점 사이로 하여 골고루 부여	
	* 성성삼구는 63삼에서 93삼 사이도 아어 글고구 구어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7	전임교원 채용 부당	
	○ 「사립학교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국가	○ 경징계(1명)
	 「사립학교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국가 공무원법」제59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고등교육법」제15조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고,「선린대학교 교원인사 규정」제2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전임교원이라 함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의전담교원 및 산학협력중점 교원을 말하며,「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 정관」제43조의 11에 따르면 교원은 소속 학과 전공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선린대학교는 2019. 3. 2. 교원인사규정 상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의전담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혁신지원단 '전담교원' 1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채용분야는 교원의 임무(학생교육지도, 학문연구, 산학연협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교양, 비교과 프로그램 융합· 	○ 경고(4명) ○ 통보 - 교원인사규정 상 전임교원에 해당 하지 않고, 교원의 임무를 담당하지 않는 채용분야에 전임교원을 임용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하시 아니하는 '내약교양, 미교과 프로그램 융합· 연계 설계, 운영 및 성과관리'로, 채용조건은 '전공무관,	
	박사수료 이상, 대학 교육 경력자 우대'로 하여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3. 6. 초빙 공고하여 3. 21. 본교 희망	
	퇴직자("19.2.28., 전 선린대 ▲과 부교수, 퇴직위로금 수령)인	
	AB를 신규임용 대상자로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에	
	임용제청하여 재단에서는 3. 29. 지원자 AB를 전담교원	
	으로 최종 임용('19.4.1.자)한 사실이 있음	

추가모집 전형 및 합격자 현황

순 번	학년 도	수험번호	학과	성명	성적	합격	접수시간	비고
1		-		-	-	합격	2019.2.14. 10:11	
2		-	-	-	-	합격	2019.2.18. 12:31	
3		-		-	-	불합격	2019.2.18. 22:30	정원마감 후 접수
4		-		-	-	합격	2019.2.14. 08:59	
5		-		-	-	합격	2019.2.14. 09:00	
6		-		-	-	합격	2019.2.14. 09:01	
7	2010	-		-	-	합격	2019.2.14. 09:02	
8	2019	-		-	-	합격	2019.2.14. 09:05	
9		-		-	-	합격	2019.2.14. 09:07	본인 합격취소
10		-	-	-	-	합격	2019.2.14. 09:09	
11		-		-	-	합격	2019.2.14. 09:09	
12		-		-	-	합격	2019.2.14. 09:14	
13		-		-	-	합격	2019.2.14. 12:17	
14		-		-	-	합격	2019.2.15. 05:06	
15		-		-	-	불합격	2019.2.15. 09:52	정원마감 후 접수
16		-		-	-	불합격	2020.2.14. 21:25	서류미제출
17		-	-	-	-	합격	2020.2.15. 13:53	
18	2020	-		-	-	불합격	2020.2.19. 23:26	정원마감후 원서 접수
19		-		-	-	합격	2020.2.18. 13:00	
20		-	-	-	-	불합격	2020.2.20. 23:15	정원마감후 원서 접수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9	입학전형 부정방지대책 미수립 및 이해관계자 사전 미신고	
	○ 「고등교육법」제34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4조에	○ 중징계(1명)
	따르면 대학입학전형은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ㅇ경고(7명)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	
	(2016학년도 이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에서는 자체 입학부정방지대책을	
	수립·시행 및 친인척이 지원한 교직원의 경우 사전신고를	
	받아 관리요원에서 배제해야 하는데도,	
	- 선린대학교는 2017학년도 이후 현재까지 입학 전형을	
	실시하면서 '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에서 입학	
	부정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AF 등 7명은 【붙임】 "교직원 자녀 입시지원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본인들의	
	자녀(총 7명)가 지원함을 알고 있음에도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고,	
	·특히 2018학년도 선린대학교 AF는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과 수시 1차에 아들(자) AG가 지원하여 합격*한	
	전형과정에 사전 신고 및 회피하지 않아 관리 요원에서	
	배제되지 않고 입학 업무를 총괄한 사실이 있음	
	* 48명 모집에 86명이 지원하여 전형결과 49위였으나 41명이	
	최종 등록하여 합격	

교직원 자녀 입시지원 현황

į	학생			모집		합:	격	전형	등록	직원인]적사항	
수험 번호	성명	관 계	학년도	시기	모집단위	여부	순 위	과정	여부	당시 소속	직위 (급)	성명
-	-	자	2018	수시 1	-	합격	49	48명 모집 최종등록 41명	등록	-	교수 (처장)	-
-	-	자	2018	정시	-	합격	4	2명 모집 최종등록 4명	등록	-	센터장	-
-	-	녀	2019	수시 2	-	합격	9	12명 모집	등록	-	교수	-
-	-	자	2019	수시 1	-	합격	66	94명 모집	무	-	7급	-
-	-	자	2020	수시 1	-	합격	12	30명 모집	아니	-	교수	-
-	-	자	2020	수시 2	-	합격	4	22명 모집	등록	-	7급	-
-	-	자	2020	수시 1	-	합격	137		미등록	-	교수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0	입학 전형 계획 변경 부당	
	○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 중징계(1명)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 통보(문책,경징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 ` '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	
	33조 제3항 및 「2019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	
	사항」 I .총칙(2.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원칙)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	
	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으며, "선린대학교 2019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18.4.)"에 따르면 수시모집 면접 방식은 대면	
	으로 하고 면접장소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는	
	'학내 지정장소'로 되어 있는데도,	
	- 선린대학교는 ▼과에서 면접 방식 변경을 요청하자 천재	
	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2018. 9. 29. 수시모집	
	면접방식에 전화면접 추가한 사실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수시 1차 응시생 AH(수험번호 ******)를 대상	
	으로 정확한 신원확인 없이 전화 면접을 실시하는 등	
	【붙임】"2019학년도 수시 모집 전화면접 실시 현황"과	
	같이 위 ▼과 등 3개 학과*에서 면접 방식 변경을 요청하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수시모집 응시생 110명을 대상으로 정확한 신원확인 없이	
	전화 면접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 ▼과, ◀계열, ▽계열	
	** (수시1차) '18.10.6. / (수시2차) '18.11.24.	

【붙임】

2019학년도 수시 모집 전화면접 실시 현황

연번	학과	구분	수험번호	성명	일자	실시자	합격여부
1		수시1차	-	-	2018.10.06		합격
2		수시1차	-	-	2018.10.06		
3		수시1차	-	-	2018.10.06		N = 1 = 1
4		수시1차	-	-	2018.10.06		불합격
5		수시1차	-	-	2018.10.06		
6	_	수시2차	-	-	2018.11.24	_	
7		수시2차	-	_	2018.11.24		
8		수시2차	-	-	2018.11.24		
9		수시2차	-	-	2018.11.24		불합격
10		수시2차	_	_	2018.11.24		
11		수시2차	_	_	2018.11.24		
12		수시1차	_	_	2018.10.06		
13		수시1차	_	_	2018.10.06		
14		수시1차	_		2018.10.06		
14	-		-		2018.10.06	-	불합격
15		수시1차	-	-	(전화불통)		
16		수시1차	-	-	2018.10.06		
17		수시1차	-	-	2018.10.06		
18		수시1차	-	-	2018.10.06		
19		수시1차	-	-	2018.10.06		
20		수시1차	-	-	2018.10.06		
21		수시1차	-	-	2018.10.06	-	
22		수시1차	-	-	2018.10.06		
23		수시1차	-	-	2018.10.06		
24		수시1차	-	-	2018.10.06		
25		수시1차	-	-	2018.10.06		
26		수시1차	-	-	2018.10.06		
27		수시1차	-	_	2018.10.06		
28		수시1차	-	-	2018.10.06		
29		수시1차	-	-	2018.10.06	_	
30		수시1차	-	_	2018.10.06	_	
31		수시1차	-	-	2018.10.06		
32		수시1차	-	-	2018.10.06		
33	-	수시1차	-	-	2018.10.06		불합격
34		수시1차	-	-	2018.10.06	-	
중략							
101		수시2차	-	-	2018.11.24	-	
102		수시2차	-	-	2018.11.24		
103		수시2차	-	-	2018.11.24		
104		수시2차	-	-	2018.11.24		
105		수시2차	-	-	2018.11.24		
106		수시2차	-	-	2018.11.24		
107		수시2차	-	-	2018.11.24	-	
108		수시2차	-	-	2018.11.24		
109		수시2차	-	-	2018.11.24		
110		수시2차	-	-	2018.11.24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1	◆과 편입학 전형 부당	
21	○ 「고등교육법」제34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은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육부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2017년 11월)에 따르면 편입학 기회의 공정성 보장과 모집인원, 일정, 전형방법 및 편입학 부정방지대책 등 주요 사항(서류평가, 면접 등 정성요소 평가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대학별로 '편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정방지대책 수립·시행및 채점 등 점검)을 포함하여 대학별 편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 '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선린대학교는 2019. 12. 10. '입시전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학년도 편입학 시행계획'을 마련(전형방법으로 전적대학 성적 50%와 면접 50%으로 확정)하면서 면접고사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고 단지 위 위원회의위원장이 "편입학 특성에 맞는 학과별 면접평가서를제작·활용해 학생을 공정하게 평가·선발하기로 함"으로정하였고, · 이에 따라 ◆과는 응시자 7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면서 문제출제방법, 문제지 인수인계 등 보안관리및 문제지 배부방법 등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지 않고면접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 지원자 총 11명(1명 모집) 중 4명은 자격미달로 탈락	

학생 제적 미처리 현황

연번	학번	학과	학년	성명	학적	휴학 연장횟수	관련증빙 첨부여부 (Y, N)
1	-	-	1	-	일반휴학	21	N
2	-	_	2	-	일반휴학	16	N
3	-	_	2	_	일반휴학	12	N
4	-	-	2	-	일반휴학	13	N
5	-	-	3	-	일반휴학	13	N
6	-	-	1	-	일반휴학	13	N
7	-	-	1	_	일반휴학	10	N
8	-	-	1	-	일반휴학	10	N
9	-	-	2	_	일반휴학	10	N
10	-	-	2	-	일반휴학	10	N
11	-	-	2	-	일반휴학	10	N
12	-	-	2	_	일반휴학	10	N
13	-	-	2	-	일반휴학	10	N
14	-	-	2	-	일반휴학	10	N
15	-	-	2	-	일반휴학	10	N
16	-	-	2	-	일반휴학	8	N
17	-	-	2	-	일반휴학	9	N
18	-	-	1	-	일반휴학	8	N
19	-	-	1	-	일반휴학	9	N
20	-	-	1	-	일반휴학	8	N
21	-	-	2	-	일반휴학	9	N
			- 중략-				
180	-	-	2	-	일반휴학	2	N
181	-	-	2	-	일반휴학	2	N
182	-	-	3	-	일반휴학	2	N
183	-	-	3	-	일반휴학	2	N
184	-	-	2	-	일반휴학	2	N
185	-	-	2	-	일반휴학	2	N
186	-	-	2	-	일반휴학	1	N
187	-	-	2	-	일반휴학	2	N
188	-	-	2	-	일반휴학	2	N
189	-	-	3	-	일반휴학	2	N
190	-	-	2	-	일반휴학	3	N
191	-	-	2	-	일반휴학	3	N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현황'과 같이 2017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위 Z는	
	136회에 걸쳐 허위로 출장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출장비	
	580,000원과 식비 248,000원 합계 828,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출장비 등 부당 수령 현황

연번	연도	일자	방문기관	출장비	식비	실습생명
1		04월 05일	-	54,000		
2		04월 10일	_	5,000		_
3		04월 13일	-	5,000		_
4		04월 17일	-			_
5		04월 17일	-	5,000		_
6		04월 18일	-			-
7		04월 18일	-	5,000		-
8		04월 23일				_
9		04월 23일	-	5,000		_
10		04월 24일				_
11		04월 24일	-			_
12		04월 24일	-	5,000		_
13		04월 24일	-			-
14		04월 24일		5,000		_
15		05월 16일		5,000		
16	2017	05월 18일		5,000		
17		05월 21일		5,000		
18		09월 11일				<u>-</u>
19		09월 11일		5,000	-	
20		09월 11일	-	5,000	8,000	_
21		09월 11일		3,000	-	
22		09월 13일		5,000		
23		09월 13일		5,000	8,000	<u>-</u>
24		09월 13일	-	3,000	0,000	
25		09월 18일		5,000		
26		09월 18일	-	5,000	8,000	
27		09월 18일		5,000		-
28		09월 18일	-	5,000		
29		09월 26일		5,000		<u> </u>
30		09월 26일	-	5,000		
중략		07 = 20 =	_	3,000		
118		10월 08일	-	5,000		-
119		10월 08일		5,000	8,000	
120		10월 09일	-	28,000		<u>-</u>
121		10월 05일		5,000		<u>-</u>
122		10월 19일		5,000		
123		10월 19일	-	5,000	8,000	<u>-</u>
123		10월 19월		5,000		<u>-</u>
125		10월 22일	-	5,000	-	
125		10월 22일	-	5,000	8,000	<u>-</u>
127	2019	10월 22일	-		0,000	
127	2019	10월 22일	-	5,000		-
129		10월 22일	-			-
130		10월 26일	<u>-</u>	5,000	8,000	
131		10월 26일	<u>-</u>	3,000	0,000	<u>-</u>
131		10월 20일	<u>-</u>	5,000		-
133		11월 01일	<u>-</u>	5,000	8,000	
134		11월 01일	-	5,000	0,000	-
134		11월 01월	-	3,000		-
136		11월 15일	-	5,000	-	-
130		11 = 13 =	 합계	580,000	248,000	
			н ⁄ग	300,000	4 1 0,000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4	성적 부여 부적정	
	○ 「선린대학교 학칙」제28조 제3항 및 「선린대학교 학칙	<① 관련>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르면 공무·상고·질병·기타 부득	ㅇ경고(5명)
	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추가시험의 성적은 'B+'까지 인정	o 통보 - AK 등 학생
	할 수 있고,「같은 규칙」제29조의2 및 「선린대학교	
	성적평가에 관한 지침(2018.2.23.)」 제8조에 따르면 실격	
	과목('F')이거나 이미 취득한 교과목 중 성적이 'D' 또는 'D+'인 경우에는 재이수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이수로	하기 바람
	취득한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② 관련>
	【추가시험 응시 학생 성적 부여 부적정】- ①	○ 경고(6명)
	- 선린대학교 ▶과 부교수 AM는 2019학년도 2학기에 'ㄴㅈ' 교과목 성적을 평가하면서 추가시험에 응시한 ▶과 1학년 AK 학생에게 성적 'A'를 부여하는 등 【붙임1】 "추가시험 응시 학생 성적 부여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9학년도 2학기부터 2020학년도 1학기까지 위 AM 등 교수 5명은 추가시험에 응시한 위 AK 등 학생 2명에게 성적 'A'를 부여한 사실이 있음 【재이수 학생 성적 부여 부적정】 - ② - 선린대학교 ◆과 부교수 AN은 2018학년도 1학기에 'ㄴㅊ' 교과목 성적을 평가하면서 ◆과 3학년 AL 학생이위 교과목을 재이수하였음에도 성적 'A+'를 부여하는 등 【붙임2】 "재이수 학생 성적 부여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까지 위	o 통보 - AL 등 학생 16명에 대하여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성적을 부여 하기 바람

지 적 사 항	처분
16명에게 성적 'A+'를 부여한 사실이 있음	
	지 적 사 항 AN 등 교수 6명은 교과목을 재이수한 위 AL 등 학생 16명에게 성적 'A+'를 부여한 사실이 있음

【붙임1】

추가시험 응시 학생 성적 부여 부적정 현황

A . 11	- 11 - 1 - 21 - 1	a) 17 m2	담대	당교원		학생			시험구분	추가시험		
연번	해당학기	과목명	학과	직급	성명	학과	학년	성명(학번)	(추가시험 사유)	성적		
1	2019-2	-	-	부교수	-					A		
2	2019-2	-	-	강사	-		1		기말	A		
3	2019-2	-	-	강사	-	-	1				기말 (질병)	A
4	2019-2	-	-	강사	-					A		
5	2020-1	-	-	교수	-	-	1	-	기말 (조부사망)	A		

【붙임2】

재이수 학생 성적 부여 부적정 현황

연	재이수	-1 F F4	담당고	고원			학생		기이수	재이수 성적													
번	학기	과목명	학과	직급	성명	학년	학과	성명(학번)	성적														
1	2018-1	-	-	부교수	-	3			F	A+													
2	2018-1	-	-	조교수	-	3	-	-	F	A+													
3	2018-1	-	-	강사	-	3	-	-	F	A+													
4	2018-2	-	-	조교수	-	2	-	-	F	A+													
5	2020-1	-		강사		2			F	A+													
6	2020-1	-	-	79 17	-	2	-	-	F	A+													
7						3	-	-	F	A+													
8						3	-	-	F	A+													
9						3	-	-	F	A+													
10						3	-	-	D	A+													
11				조교수	조교수	775	775												3	-	-	F	A+
12	2020-1												3	-	-	F	A+						
13	2020-1	-	-			-	3	-	-	F	A+												
14					3	-	-	F	A+														
15																		3	-	-	F	A+	
16						3	-	-	F	A+													
17						3	-	-	D+	A+													
18						3	-	-	F	A+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5	근속포상 부상 지급 절차 등 부적정	
	 근속포상 부상 지급 절차 등 부적정 ○ 「선린대학교 포상규정(2013. 5. 27. 제정)」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르면, 포상대상으로는 대학 발전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경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교직원, 재학생 또는 외부인으로 하고, 포상의 구분과 자격에 따라 대학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근속한 교직원에게 근속상을 수여하며, 포상을 할 때 근속상은 표창장에 의해 포상하고, 포상의 부상은 내부 규정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포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며 포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직원에 대한 부분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직원 외에 대한 부분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선린대학교는 2017. 3. 20. 대학에 30년을 근속한 ▷과 교수 AO 등 5명에게 근속상으로 표창장을 수여하여 포상하면서 포상의 부상에 관한 내부규정 근거나 해당 포상심사위원회 의결 없이 구매대금 합계 5,997,200원 상당의 순금 17돈을 지급하는 등 【붙임】 "연도별 교 	o 기관경고 o 통보 - 포상의 부상에 관한 내부규정을 미런하고 포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 운영하기 바람
	상당의 순금 17돈을 지급하는 등 【뭍임】 "연도별 교 직원 근속 포상대상자 부상 지급 현황"과 같이 2017. 3. 부터 2020. 3.까지 대학에 근속연수별로 근속한 교직원	
	20명에게 근속상으로 표창장을 수여하여 포상하면서 포상의 부상에 관한 내부규정 근거나 해당 포상심사위원회 의결 없이 구매대금 합계 14,942,400원 상당의 순금 39돈을 포상 부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연도별 교직원 근속 포상대상자 부상 지급 현황

연도	포상	근속연수별 대상자			근속연수별 부상품	총 구매대금(원)	내부규정	포상심사위원회
한도	수여일자	교원 직원 소계			구매 내역	중 기 메 네 ㅁ (전)	준수 여부	의결 여부
2017	3.20.	30년 1명 20년 3명 10년 1명	-	5	30년 순금 10돈 20년 순금 5돈 10년 순금 2돈	5,997,200		×
2018	3.21.	-	30년 1명	1	30년 순금 10돈	2,323,200		×
2019	3.18.	30년 1명 20년 2명 10년 3명	10년 2명	8	30년 순금 3돈 20년 순금 2돈 10년 순금 1돈	3,003,000	규정 부존재	×
2020	3.23.	30년 1명 20년 2명 10년 1명	20년 1명 10년 1명	6	30년 순금 3돈 20년 순금 2돈 10년 순금 1돈	3,619,000		×
	계		20명		39돈	14,942,400		

[※] 매년 근속연수에 따른 부상품 수량이 변동

기관명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 선린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6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 비율 과도	
	○ 「사립학교법」제32조의4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재단】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ㅇ경고(3명)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선린대학교】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립전문대학(법인) 기본재산	(4 8)
	및 회계관리 안내(2017. 4. 17.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의 붙임 '사립전문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와 「학교법인	7 "22 10
	및 사립전문대 결산서 제출 안내(2018.4.19, 2019.4.25., 2020.5.6., 교육부 전문대학법인팀, 사립대학정책과)」 및 「사립대학(법인) 예결산 작성 유의사항(한국사학진홍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처리기준에 따라 등록금회계 수입
	따르면 '사립대학 이월금 처리기준'에서 연도별 등록금 회계 기타이월금의 적정규모에 대해 등록금회계 수입	
	총액(자금계산서 기준) 대비 기타이월금의 비율은 '17년 1.4%이내, '18년 이후 1.0% 이내이고, 기타이월금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증가한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 및 선린대학교는 2017회계연도의 등록금회계 수입총액 대비 기타이월금 비율을 적정 기준 대비 16.6% 초과(이월금 비율 18.0%, 초과금액 2,752,006천원) 하는 등 【붙임】 "등록금회계(자금계산서 기준) 기타이월금 내역"과 같이 2017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등록금회계 수입 총액(자금계산서 기준) 대비 기타이월금	
	비율을 적정기준 대비 적게는 4.8%(초과금액 823,936천원)	
	에서 많게는 18.5%(초과금액 3,159,180천원)를 초과한 사실이	
	있음	

등록금회계(자금계산서 기준) 기타이월금 내역

(단위: 천원)

회계	등록금	명시이월	기타이월금 내역		기타이월	초과금액	
연도	회계수입	당시의절	금액(a)	비율	금액(b)	비율	(a-b)
2017	16,591,896	160,200	2,984,292	18.0	232,286	1.4% 이내	2,752,006
2018	17,263,768	2,000,000	996,573	5.8	172,637	1.0% 이내	823,936
2019	17,057,696	1,971,400	3,329,756	19.5	170,576	1.0% 이내	3,159,180

^{* 「}사립전문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 및 「사립대학(법인) 예결산 작성 유의사항」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7	A 관사 사용료 교비회계 집행 부적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ㅇ 경고(5명)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및 기타 학교교육에	○ 시정(회수)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	- 부적정하게 집행한
	회계 규칙」제21조에 따르면 법인 및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계 5,526,310원을 A로 부터 회수하여
	하고 있으며, 「선린대학교 관사관리규정」 제4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관사의 사용대상자는 총장, 기타 총장이	치하기 바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관사 사용에 있어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공과금(관리비,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케이블방송, 인터넷 사용료)과 제비용(소모품 및 소규모	
	수선비 포함) 및 사용자 과실로 인한 시설수선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선린대학교는 2016. 10. 법인 A가 사용한 교육용 관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ㄷ)의 2016년 9월분 관리비 등	
	합계 109,21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붙임】	
	"법인 A 교육용 관사 사용료 현황"과 같이 2016. 9.부터	
	2019. 9.까지 A 개인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 등	
	총 37건 합계 5,526,31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법인 A 교육용 관사 사용료 현황

(단위: 원)

					(단위: 원
순	대상년월	관리비	인터넷 사용료 및 tv 수신료	도시가스료	합계
1	2016년 9월분	76,860	29,230.	3,120	109,210
2	2016년 10월분	86,810	29,230	13,680	129,720
3	2016년 11월분	78,270	29,230	11,810	119,310
4	2016년 12월분	83,090	29,230	69,130	181,450
5	2017년 1월분	88,260	29,230	55,220	172,710
6	2017년 2월분	92,750	25,930	88,220	206,900
7	2017년 3월분	90,320	29,230	56,670	176,220
8	2017년 4월분	96,960	29,230	49,770	175,960
9	2017년 5월분	88,100	29,230	15,500	132,830
10	2017년 6월분	90,870	29,230	3,270	123,370
11	2017년 7월분	99,770	29,230	4,910	133,910
12	2017년 8월분	98,090	29,230	5,720	133,040
13	2017년 9월분	92,590	29,230	4,930	126,750
14	2017년 10월분	83,690	29,230	22,380	135,300
15	2017년 11월분	84,860	29,230	43,590	157,680
16	2017년 12월분	83,000	29,230	57,150	169,380
17	2018년 1월분	88,820	22,630	52,860	164,310
18	2018년 2월분	93,560	22,630	75,680	191,870
19	2018년 3월분	88,370	22,630	56,000	167,000
20	2018년 4월분	91,000	22,630	34,440	148,070
21	2018년 5월분	92,180	22,630	27,700	142,510
22	2018년 6월분	78,790	22,630	9,160	110,580
23	2018년 7월분	90,390	29,230	1,590	121,210
24	2018년 8월분	105,640	29,230	5,480	140,350
25	2018년 9월분	81,740	29,230	-	110,970
26	2018년 10월분	-	-	51,730	51,730
27	2018년 11월분	174,460	59,990	51,730	286,180
28	2018년 12월분	81,160	29,230	63,960	174,350
29	2019년 1월분	86,220	29,230	34,830	150,280
30	2019년 2월분	90,300	29,230	68,670	188,200
31	2019년 3월분	85,960	29,230	49,380	164,570
32	2019년 4월분	90,490	29,230	29,360	149,080
33	2019년 5월분	82,910	29,230	12,450	124,590
34	2019년 6월분	86,610	29,230	9,380	125,220
35	2019년 7월분	92,720	29,230	11,300	133,250
36	2019년 8월분	144,230	29,230	7,220	180,680
37	2019년 9월분	85,920	29,230	2,420	117,570
	계	3,325,760	1,040,140	1,160,410	5,526,310

기관명 :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 선린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8	산학협력단 사업 자금 관리 및 회계처리 부적정 등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① 관련>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선린대학교】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	○ 경징계(1명)
	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 경고(1명)
	규칙」제15조 제1호, 제2호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 ,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② 관련>
	계상하여야 하며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학교법인 인산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교육재단】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제31조에 따르면 산학	○ 경고(3명)
	협력단의 단장은 회수가 불확실하여 대손이 예상되는	○ 통보
	부실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 횡령금에 대한 채권액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는데도,	177,067,374원(이자
	【사업 자금 관리 및 회계처리 부적정】- ①	별도)에 대해 채권 추심등을 통해 당시자
	-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화수하여
	포항지청 '2014년 ☞☞기업체험'사업(사업비 242,825천원)과	
	포항시 지방재정지원사업 '2014년 ☜☜프로젝트'사업	세입처리하기 바람
	(사업비 220,000천원)을 진행하던 중 2014.8.5.부터 2014.10.	
	30.까지 산학협력단 AP의 사업자금 및 운영비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168,489,651원(2015.4. 결산 기준)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 위 횡령사건으로 AP에 대해 고발조치(`14.12.26.) 및 파면조치 (`15.2.11.)	
	- 2014.12.부터 2015.2.까지 위 횡령 건으로 부족해진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잔여사업 수행자금 151,000,000원을 보직자(당시 총장,	
	부총장, 산학협력단장 등)로부터 차입하여 회계처리 없이	
	잔여사업비에 집행하였다가 2015. 3.에서 2015. 4.경 2014	
	회계연도 산학협력단회계 결산감사 과정에서 비로소	
	차용금액 151,000,000원을 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횡령금 168,489,651원의 회수가능성 검토 없이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횡령금 168,489,651원 충당내역: 차입금 151,000,000원 + 산학협력단 운영비 17,489,651원	
	【횡령관련 채권관리 부적정】- ②	
	- 인산교육재단은 산학협력단을 대신하여 횡령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2015.6.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185,373,425원에 대한 지급결정(채권자: 인산	
	교육재단, 채무자 AP)을 받았는데도, 2015. 9. 25. 제3채무자(경주	
	소재 **새마을금고)로부터 8,306,051원의 채권만을 회수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 2020.8. 감사일 현재까지 채무자 AP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9	학교시설사용료 산학협력단 세입처리 부당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 경징계(2명)
29		 경고(7명) 통보 산학협력단 세입으로 처리한 학교시설
	로 세입처리한 사실이 있음 ※ '포항시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강의실사용료의 경우 2018년도까지는 교비회계로 세입처리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이를 변경하여 산학협력단 회계로 세입처리	

학교시설사용료 산학협력단 세입처리 내역

(단위: 원)

순 번	년도	세입 처리일	내용(적요)	수입금액	사용시설
1	2017	8.23.	2017년 전문대학 취업역량강화사업 시설사용료 (세미나실 외)	1,200,000	2층 멀티미디어실, 세미나실
2	2018	8.23.	2018년도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 교육과정 시설사용료 수입	2,280,000	2층 세미나실 외
3	2019	9.11.	2019년 포항시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시설사용료 수입 (대형홀,강의실)	10,650,000	성시홀, 강의실 301호, 302호
			14,130,000		

지 적 사 항	처 분
가족수당 수령 부적정	
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 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선린대학교 보수규정」제20조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있는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선린대학교 가족수당 지급기준」(사무치 재무회계팅-2016.10.18.)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전임교원, 일반직원 및 행정직원이며 부양가족요건으로는 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거나 당해 교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선린대학교 ▷과 조교수 AQ은 2018. 2. 직계존속의 세대분리로 인하여 가족수당 수령요건이 소멸하였는데도, 2018. 3.부터 2020. 8.까지 가족수당 합계 600천원(30월, 월20천원)을 수령하는 등【불임】"가족수당 부적정 수령현황"과 같이 2018. 3.부터 2020. 8.까지 위 AQ 등 교직원 7명은 가족수당 수령요건이 소멸했음에도 가족수당 합계 2,42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o 시정(회수) - 기족수당 수령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된 기족수당 합계 2,420 천원을 관련자들로 부터 회수하여 교비 회계로 세입조치하기
	가족수당 수령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 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선린대학교 보수규정」제20조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있는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선린대학교 가족수당 지급기준」(사무체 재무회계팀-2016.10.18.)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전임교원, 일반직원 및 행정직원이며 부양가족요건으로는 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거나 당해 교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선린대학교 ▷과 조교수 AQ은 2018. 2. 직계존속의 세대분리로 인하여 가족수당 수령요건이 소멸하였는데도, 2018. 3.부터 2020. 8.까지 가족수당 함계 600천원(30월, 월20천원)을 수령하는 등【불임】"가족수당 부적정 수령현황"과 같이 2018. 3.부터 2020. 8.까지 위 AQ 등 교직원 7명은 가족수당 수령요건이 소멸했음에도 가족수

가족수당 부적정 수령 현황

(단위: 천원)

구		,_		1-13		지:	급내역			
· 분	소속	직급	성명	가족관계	과오지급 개시월	종료월	지급 월수	월 지급액	소계	비고
1	-	조교수	-	직계존속	2018.03	2020.08	30	20	600	세대분리 (*18.02)
2	-	부교수	-	배우자	2019.05	2020.08	16	40	640	이혼 ('19.04)
3	-	교수	-	배우자	2019.12	2020.08	9	40	360	이혼 ('19.11.)
4	-	교수	-	직계존속	2020.01	2020.08	8	20	160	사망 ('19.12)
5	-	일반직	-	직계존속	2020.02	2020.08	7	40	280	세대분리 ('20.01)
6	-	일반직	-	직계존속	2020.02	2020.08	7	40	280	세대분리 ('20.01)
7	-	조교	-	직계존속	2020.04	2020.08	5	20	100	세대분리 ('20.03.)
				합 계					2,420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1	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 수의계약 체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 경고(5명)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물품	
	구매 및 용역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계약의 체결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선린대학교는 2017. 2. 28. ♡♡데이타(대표: AR)와 일반경	
	쟁입찰 대상인 'PC 및 주변기기, 전산실 운영유지보수(계	
	약금액 42,000천원)'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붙	
	임】"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2017. 2.부터 2018. 3.까지 위 'PC 및 주변기기, 전산실	
	운영 유지보수'등 일반경쟁입찰대상 용역 2건(계약금액	
	합계 74,670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음	

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 수의계약 현황

연 번	계약명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 금액	계약상대자 (대표자)	관련자
1	PC 및 주변기기, 전산실 운영 유지 보수	2017. 2 28.	2017. 3. 1.~ 2018. 2. 28.	42,000	-	-
2	PC 및 주변기기, 전산실 운영 유지 보수	2018. 3. 1.	2018. 3. 2.~ 2019. 3. 1.	32,670	-	-
합 계				74,670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2	직무발명 미신고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르면 직무	○ 경고(1명)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	3 (= 3)
	등록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o 통 보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	- 개인명의로 출원
	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선린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에 관한 규정」	재산권을 관련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규정에 따라 처리 하기 바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171 1 1
	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 반도체배치설계, 컴퓨터프로	
	그램, 품종, 노하우기술 등의 신지식 재산권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대학 또는	
	교외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대학의 물적·인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제1호의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발명으로써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같은 규정」제10조 및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교직원 등이 본 규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	
	협력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발명자로	
	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위원회의 등급 심의 판단에 의하여 권리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며 심의기준은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 선린대학교 ◆과 조교수 AS는 2015. 4. 29. "ㄹ 운동 장치"	
	직무발명(특허)을 하고도 2020. 8. 감사일 현재까지 산학	
	협력단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3	강의전담교원 실습출장비 미지급	
33	강의전담교원 실습출장비 미지급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선린대학교 국내외여비규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국내 출장은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정하는 바에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근무지 내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 선린대학교는 2017.9.7. ▷과 AT가 전임교원과 동일한사유로 실습출장을 다녀왔음에도 전임교원과 달리출장비 미지급 현황"과 같이 2017.9.7.부터 2020.2.까지 위 AT 등 총 23명 강의전담교원의 실습출장비 93건을 지급하면서 동일 사유로 출장비를 지급하는 전임교원과 달리출장비 합계 10,810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통보 - 근거 없이 미지급된 출장비를 관련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지급하기 바람

강의전담교원 실습 출장비 미지급 현황

(단위: 원)

순번	학과명	직급	교수명	출장기간	출장지	미지급액			
1	-	강의전담	-	2017.09.07~12.07(13회)	포항	65,000			
2	-	강의전담	-	2017.07.04~11.26(17회)	포항	85,000			
3	-	강의전담	-	2017.07.03~12.12(36회)	포항	180,000			
4	-	강의전담	-	2017.07.04~12.07(40회)	포항	200,000			
5	-	강의전담	-	2017.09.04~12.08(48회)	포항	240,000			
6	-	강의전담	-	2017.07.04~12.07(30회)	포항	150,000			
7	-	강의전담	-	2017.07.04~12.08(40회)	포항	200,000			
8	-	강의전담	-	2017.07.04~12.05(26회)	포항	130,000			
9	-	강의전담	-	2017.08.28~12.06(34회)	포항	170,000			
10	-	강의전담	-	2017.07.03~12.08(28회)	포항	140,000			
11	-	강의전담	-	2017.09.05~12.08(22회)	포항	110,000			
12	-	강의전담	-	2017.08.29~10.24(6회)	포항	30,000			
13	-	강의전담	-	2018.03.14~06.08(24회)	포항	120,000			
14	-	강의전담	-	2018.03.21~06.08(24회)	포항	120,000			
15	-	강의전담	-	2018.03.19~06.08(47회)	포항	235,000			
				중략					
81	-	강의전담	-	2019.12.23~2020.02.03(7회)	포항	35,000			
82	-	강의전담	-	2019.12.23~2020.02.06(14회)	포항	70,000			
83	-	강의전담	-	2019.12.23~2020.02.21(18회)	포항	90,000			
84	-	강의전담	-	2019.12.23~2020.01.03(8회)	포항	40,000			
85	-	강의전담	-	2019.12.23~2020.01.03(8회)	포항	40,000			
86	-	강의전담	-	2019.12.23~2020.01.03(8회)	포항	40,000			
87	-	강의전담	-	2019.12.23~2020.01.03(6회)	포항	30,000			
88	-	강의전담	-	2019.12.23~2020.01.03(8회)	포항	40,000			
89	-	강의전담	-	2019.12.23~2020.01.03(6회)	포항	30,000			
90	-	강의전담	-	2019.12.23~2020.01.03(8회)	포항	40,000			
91	-	강의전담	-	2018.07.20	창원	80,000			
92	-	강의전담	-	2019.01.17	창원	80,000			
93	-	강의전담	-	2019.07.11	창원	80,000			
	<u>합</u> 계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4	국고지원 시설공사 전자조달시스템(G2B) 미활용	
	○ 「선린대학교 구매계약규정」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 주의(3명)
	공사는 3,000만원 미만일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의	, ,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정의서」지출관리 및「선린	
	대학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국고지원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계약과 관련한 세부	
	집행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선린대학교는 2019. 7. 22. 추정가격이 25,135천원인	
	"&실 교체공사(계약금액 23,870천원, 공사기간 '19.7.22.~8.23.)"를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업체 2곳으로	
	부터 견적서를 전자조달시스템(G2B)이 아닌 서면으로	
	받아 ㈜슈슈(대표 AU)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	
	"국고사업 전자조달시스템(G2B) 수의견적 미시행 현황"과	
	같이 2019. 7.부터 2020. 1.까지 위 "&실 교체공사"	
	등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총 5건(계약금액 합	
	계 138,464천원) 시설공사를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	
	으로 진행하면서 지역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전자조달	
	시스템(G2B)이 아닌 서면으로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국고사업 전자조달시스템(G2B) 수의견적 미시행 현황

연 번	회 계	계약건명	추정가격	견적일자	계약금액	계약대상자	공사기간	타견적회사 (견적금액)	관련 사업
1	국 고	-	25,135	2019-07-10	23,870	-	2019-07-22 ~ 2019-08-23	-	
2	국고	-	29,090	2019-08-20	28,479	-	2019-08-21 ~ 2019-08-31	-	
3	국 고	-	28,582	2019-09-01	28,045	-	2019-09-09 ~ 2020-01-03	-	대학 혁신 지원 사업
4	국고	-	32,120	2020-01-25	28,600	-	2020-01-28 ~ 2020-02-14	-	
5	국 고	-	32,280	2020-01-14	29,470	-	2020-01-17 ~ 2020-02-14	-	
		합계	147,207	-	138,464	-	-	-	-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5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 시설공사 계약체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ㅇ경고(3명)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전문공사의 경우	<별도조치>
	15,000천원 이상인 공사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건설	_ ,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고발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선린대학교는 2017. 11. 20. "지진피해로 인한 △관 외벽 보수공사(계약금액 82,000천원)"를 추진하면서 전문건설업을	
	도구등자(세약급액 62,000전원) 를 구선하던지 전문선결법을 등록하지 않은 ္QQ개발(대표 AV)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 공사계약 체결현황"과	
	같이 2017. 11. 부터 2017. 12.까지 전문건설업을 등록	
	하지 않은 위 ♬♬개발과 총 2건(계약금액 합계 113,000천원)의	
	시설공사를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음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 공사계약 체결현황

연			계약	계	약상대자		
번	공사명	계약일	게 ㅋ 금액	업체명	대표자	건설업면허 보유여부	적정건설업 면허
1	지진피해로 인한 △관 외벽 보수공사 (철거 및 보강공사)	2017-11-20	82,000	육육개발	AV	Х	시설물유지관리업
2	지진피해로 인한 ★관 5층 철거공사 (철거공사)	2017-12-21	31,000	육육개발	AV	X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합 계	-	113,000	-	-	-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6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업무분장 부적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경고(6명)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 종사자가 1,000명(상시 연구활동종사자 포함) 이상인 경우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중 1명 이상으로 하여급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연구실 사고 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지도・조언,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현황 통계 유지・관리 등 연구실안전환경과 관련된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선린대학교는 2015. 6. 29.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신규채용한 AW에게 2016. 9. 1. 당초 채용 목적과달리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담업무 외 도서관 업무를 검무(19.1.14.~'20.6.30.)하도록 하거나 타법에 따라 선임해야하는 안전관리자*업무를 추가로 부여('20.7.1.~'20.8. 감사일)하는 등 【붙임】"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업무분장 현황"과 같이 2016. 9.부터 2020. 8. 감사일 현재까지 위 AW에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담업무 외연구실환경관리와 관련없는 별도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음*위험물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 동보 -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로 선임된 담당자의 업무 분장을 법령 등 규정에 맞게 적의 조치하기 바람
	* 위험물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업무분장 현황

서크리시리라다					
연구실안전환경	7) 5) 17	채용당시 업무분장	2016-2018년도 업무분장	2019년도 업무분장	2020년도 업무분장
관리자 성명	전담업무	('15.6.29.)	('16.9.1.~'19.1.13.)	('19.1.14.)	('20.7.1.)
(관련업무)					
	1.연구실 안전점검	1.연구실 안전점검	1.연구실 안전점검	1.연구실 안전점검	1.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및 정밀안전진단의	및 정밀안전진단의	및 정밀안전진단의	및 정밀안전진단의
	살꼐학수립및실시	살꼐학급및살시	살꼐학급및살시	살꼐학급및살시	살꼐하다고
	2.연구실 안전교육	2.연구실 안전교육	2.연구실 안전교육	2.연구실 안전교육	2.연구실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계획 수립 및 실시	계획 수립 및 실시	계획 수립 및 실시	계획 수립 및 실시
	3.연구실 사고발생	3.연구실 사고발생	3.연구실 사고발생	3.연구실 사고발생	3.연구실 사고발생
AW	원인조사 및 재발	원인조사 및 재발	원인조사 및 재발	원인조사 및 재발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방지를 위한 기술적	방지를 위한 기술적	방지를 위한 기술적	방지를 위한 기술적
(연구실안전	지도·조언	지도·조언	지도·조언	지도·조언	지도·조언
환경관리자	4.연구실 안전환경	4.연구실 안전환경	4.연구실 안전환경	4.연구실 안전환경	4.연구실 안전환경
고유업무)	및 안전관리 현황에	및 안전관리 현황에	및 안전관리 현황에	및 안전관리 현황에	및 안전관리 현황에
Z 11 B 1)	관한 통계 유지·관리	관한 통계 유지·관리	관한 통계 유지·관리	관한 통계 유지·관리	관한 통계 유지·관리
	5. 안전관라규정 위반한	5.안전관라규정 위반한	5.안전관리규정 위반한	5. 안전관리규정 위반한	5. 안전관리규정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연구활동종사자에	연구활동종사자에	연구활동종사자에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 건의	대한 조치 건의	대한 조치 건의	대한 조치 건의	대한 조치 건의
	6.안전관리규정 또는	6.안전관리규정 또는	6.안전관리규정 또는	6.안전관리규정 또는	6.안전관리규정 또는
	연구시설 안전성	연구시설 안전성	연구시설 안전성	연구시설 안전성	연구시설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확보에 관한 사항	확보에 관한 사항	확보에 관한 사항	확보에 관한 사항
					1.명패 호실관리
					2.위험물안전관리자
					3.가스안전관리자
					4.시설공사 및 유지
			1.일반구매(실습재료,		관리(가스, 보일러,
			소모품,학과운영		위험물안전)
			물품등)		5.급배수시설공사
AW			2.보안업무CCTV		및 유지관리(곧바로
(연구실안전			3.경비용역관리		처리)
			4.도면관리		6.위생 및 환기시설
환경관리자	-	-	5. 명함, 명패 호실관리	1.도서관(겸직)	공사 및 유지관리
고유업무			6.조교 출장		(곧바로처리)
이외의 업무)			7.문서수발		7.건축 및 실내건축
' '-' ' '			8.직인관리(부)		(공사(부), 유지보수)
			9.시설대여		8.차량운반구 관리
			10.우편수불.신문.		9.기계기구, 집기비품
			간행물		수리(일반)
					10.환경관리(위생,
					비데, 소독)
					11.담당위원회, 규정,
					제세금 관리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7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 부적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9조 및 제50조 제4항에	○ 경고(6명)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9조 및 제50조 제4항에 따르면 물품관리자・물품출납원 [*]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물품관리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선린대학교 물품관리 규정」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재물조사는 행정처장이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학교의 물품관리자는 학교의 장으로 하고, 소속직원중에서 분임물품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수 있으며, 물품관리자전향의 분임물품관리자를 포함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 - 선린대학교는 2018. 4. 이후부터 2020. 8. 감사일 현재까지 재물조사를 완료하지 않고 결과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아 2019회계연도 결산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기계기구(소계 12,440,567천원), 집기비품(소계 7,499,206천원) 등 자산금액 합계 19,939,773천원의 유형 고정자산에 대한도난, 망실, 파손, 불용처리 및 재고 여부를 파악하지아니한 사실이 있음 ※ 매년 4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법인 내 외부 회계감사,결과 총 3차례(18~'20) 재물조사 실시 미흡으로 지적받은 바 있음	○ 통보 - 관련법령에 따라 재물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대차 대조표 등 재무 제표에 반영하고, 물품 분실과 관련 하여 「물품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 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경비 미정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 경고(3명)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 시정(회수)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합계 2,916천원을 사공업체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2곳)로부터 화수하여	
	명시된 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치하기 바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선린대학교는 2017. 11. 20. ♣♣개발(대표 AV)과 계약(계약		
	금액 82,000천원, 공사기간 ′17.11.20.~′18.1.15.)한 "△관 철거		
	및 보수공사"를 2018. 1. 15. 준공하면서 시공사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및 연금보험료 납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16천원		
	및 연금보험료 837천원 등 합계 2,753천원을 정산(감액)		
	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붙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경비 미정산 현황"과 같이 2018. 1.부터 2019. 1.		
	까지 위 "△관 철거 및 보수공사"등 총 2건(계약금액		
	188,260천원) 시설공사를 준공하면서 시공사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내역 및 연금보험료 납입내역을 제출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하지	않았음에도	산업안	전보건관	난리비	및 연금	-보험료	
	합계	2,916천원을	정산(김	-액)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경비 미정산 현황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		법정경비		미정산 금액* (환수액)	업체명	담당자
			구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국민연금 보험			
1	△관 철거 및 보수공사 ('17.11.20.∼'18.01.15.)	82,000	준공 시 인정금액	1,916	837	2,753	유 육개발	-
			감사 인정금액	0	0			
			미정산금액	1,916	837			
2	지진피해로 인한 선린대학교 ★관 리모델링 공사 ('18.11.17.~'19.01.09.)	106,260	준공 시 인정금액	2,539	0	163	☆☆(주)	-
			감사 인정금액	2,376	0			
			미정산금액	163	0			
			준공 시 인정금액	4,455	837			
합계		188,260	감사 인정금액	2,376	0	2,916	-	-
			미정산금액	2,079	837			

^{*}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인정 : 납입증명서 미제출